

의안번호	제753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문순규·김태웅·김장하·최은하·심영석·전홍표 이우완·박선애·한은정·이현순·김상현 의원
발의연월일	2021. 5. 28.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53
----------	-----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문순규·김태웅·김장하·최은하·심영석·전홍표
이우완·박선애·한은정·이헌순·김상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문순규 의원)**

1. 의회사무국-4205(2021. 4. 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	발의자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문 순 규 의 원

붙임 : 1.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1부.

2.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안) 1부.

3.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서수정안)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1부. 끝.

창 원 시



주무관

강혜영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기획관

전결 2021. 5. 13.

김종필

협조자

시행 기획관-6367

(2021. 5. 13.)

접수 의회사무국-4833

(2021. 5. 13.)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aeiou1005@korea.kr / 비공개(5)

=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문순규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상정시기 : 제10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예정)
- 발 의 자 : 문순규 의원(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검토사항

① 관계법령 저촉 여부 : 저촉 사항 없음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중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하 중략>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중략>

② 조문 검토 →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필요

제 정(안)	검 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u>청소년지도 업무 및 지원 업무</u> 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u>청소년활동 업무</u> 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정의된 용어 사용으로 조문 명확 규정 필요
제2조(정의)	<별도 의견 없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u>적용대상</u> 은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u>적용대상</u> 은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장의 책무)	<별도 의견 없음>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u>종합계획을 5년마다</u>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하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u>5년마다 종합계획</u> 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하생략>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삭제> ※ 제6조(종합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조문 규정 불요
제8조(실태조사)	<별도 의견 없음>
제9조(처우 개선 등 사업) <이하중략>	제9조(처우 개선 <u>사업 등</u>) <이하중략>
제10조(시행규칙)	<별도 의견 없음>

③ 재정 부담 : 불입 2(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

※ 의안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④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1개 지자체

※ (문순규)의원 발의 조례안과 유사

○ 충청남도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9.7.10. 제정)

※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검토 중임(제주특별자치도 등)

□ 종합의견 → 조례(안) 제정 타당(단, 일부 조문 수정 및 삭제 필요)

○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것이 없고,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일부 조문 규정 불명확, 조문간의 내용 중복 등으로 수정 및 삭제 필요

※ (수정) 제1조(목적) 등 / (삭제)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불입 1. 의원발의 조례 수정(안) 및 관계 법령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문순규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대상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범위) 이 조례는 ~~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삭제>~~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관련조항	재정수반요인	비용 추계
제8조 (실태조사)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 의뢰 시	연구용역시 비용발생 가능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시 비용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 ▷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요인이 사유 발생 및 필요시 추계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복지여성보건국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창원시 의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문순규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5. 10.(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제10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붙임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2021. 4. 26.
 협조자 경제복지여성 강웅기 전문위원

시행 의회사무국-4205 (2021. 4. 26.)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151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hyeri0815@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문순규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 업무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 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